

RCEP 협상 동향과 시사점 *

정 대 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 RCEP 협상의 배경 및 경과

1.1. 협상의 배경

우리말로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불리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 10개국¹⁾과 ASEAN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대부분의 FTA들은 양자간 협정인데 비해 RCEP은 다자간 협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양자간 FTA에 비하여 협상의 방향과 타결 시점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RCEP은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 정상 회담에서 RCEP에 대한 ASEAN 기본틀(ASEAN Framework)이 제시되었고,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개시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초기 논의는 16개국이 참여하는 현재의 RCEP의 형태가 아니었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ASEAN+3)은 1997년 12월 ASEAN+3 정상회의 개최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ASEAN+3 협

* (dhchung@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김영훈 외(2016)의 일부를 발췌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 ASEAN의 회원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모두 10개국임.

력체가 조성되어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경제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해왔었고,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동아시아 FTA(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를 제안하였다. 한편 일본은 중국의 주도로 동아시아경제통합 논의가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ASEAN+6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를 제안하였다. EAFTA와 CEPEA는 각각 중국과 일본의 주도로 논의가 되었으며, 각각의 연구 결과는 2009년 8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 EAFTA와 CEPEA는 모두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양측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역내에는 한·중·일 3국간의 FTA도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ASEAN은 이러한 틈을 타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RCEP을 제안하면서 현재의 RCEP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ASEAN은 ASEAN 기본틀에서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을 RCEP 대상국으로 설정하고, ASEAN의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별우대조치를 취하되 상품양허의 경우 개방수준이 높은 단일 양허안을 도출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ASEAN 기본틀에는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RCEP 참여국은 일본이 제안한 CEPEA의 참여국과 같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ASEAN이 제안한 RCEP을 수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당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과도 연관이 있다.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EAFTA와 CEPEA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미국은 ASEAN 4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었다. TPP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TPP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협상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균열을 가할 수 있는 협상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리더십 발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협상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중국은 지역경제통합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또 TPP 협상의 대항마로 RCEP에 참여하게 되었다.

1.2. 협상 경과

RCEP 협상은 2016년 9월 현재까지 각 국을 오가며 총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은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협상에서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TNC) 활동,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향후 협상 일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되었다. 제2차 협상은 2013년 9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었다.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각 작업반별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다른 협상 분야의 추가 작업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차 협상은 2014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상품분야에서는 각 국이 제안한 협상방식과 협상목표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서비스·투자분야 등에서도 작업반 회의가 논의되었다. 2014년 3월 중국 난닝에서 개최된 제4차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논의는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4차 협상부터는 경쟁, 지적재산권, 경제협력 분야 등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품 분야의 모델리티를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분야의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향후 RCEP 협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5차 협상은 2014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었으며, 8월에 개최되는 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 가시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분쟁 해결 분야에서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RCEP 협상에 임하였다.

RCEP은 상품양허 분야에서 신흥국과 그 외 국가들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인도, 중국 등 신흥국들은 상품분야 자유화율을 전체상품의 40% 수준으로 주장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그 보다 높은 80%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개최된 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상품자유화율을 협정 발효 10년 이내 80% 수준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제6차 협상은 2014년 12월 인도에서 개최되었으며, 8월 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협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분야의 논의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협력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등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였다.

제7차 협상은 2015년 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RCEP 협상은 2015년 말을 타

결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협상부터는 더욱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8차 협상과 제9차 협상은 각각 2015년 6월 일본 교토와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되었다. 두 차례의 협상에도 협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7월과 8월 장관회의를 통하여 2015년 내에 실질적인 사안들을 타결하기로 하고 2016년에는 기술적인 사안들은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10차 협상 이전인 10월 5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RCEP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여러 전문가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제10차 협상이 RCEP 협상을 연내 타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대외 통상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RCEP 제10차 협상은 2015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시장접근분야 협상이 시작되는 성과를 이룸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RCEP 협상이 도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초 2015년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RCEP 협상은 11월 ASEAN 관련 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을 연기하고, 2016년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결의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제11차 협상은 2016년 2월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상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협상이다. 1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부과만 개최하는 등 연중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12차 협상과 제13차 협상은 2016년 4월과 6월에 호주 퍼쓰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다. 각 국은 연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였으나 각 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일려 큰 진전이 없이 끝났다. 특히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견이 컸다. 중국은 각 국의 발전수준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자유화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2015년 높은 수준으로 타결된 TPP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은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8월 5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4차 RCEP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상품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많은 국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제14차 협상은 우리나라가 제시한 상품분야의 절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RCEP은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참여국들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교역구조 등의 이유로 각 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16년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맞추어 조기타결을 위한 노

력이 지속되었으나, 9월 개최된 EAS에서는 RCE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RCEP 타결을 2017년 이후로 연기하였다.

2. 우리나라와 RCEP 회원국들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다. 싱가포르와는 2006년 3월 FTA가 발효되었으며, ASEAN과의 상품협정은 2007년 6월에 발효가 되었다.²⁾ 한-인도 FTA는 2010년 1월 발효가 되었으며,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에 발효 되었다.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그리고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모두 발효되었다. 한편, 한-일 FTA는 2003년 12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1월 제6차 협상을 이후로 현재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1 RCEP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진행단계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 발효 | 싱가포르 | •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 ASEAN 시장의 교두보 |
| | ASEAN (10개국) | •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 인도 | •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 BRICs국가, 거대시장 |
| | 호주 | • 20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 총 7차례 협상 개최(2009년 5월, 8월, 11월 / 2010년 3월, 5월 / 2013년 11월, 12월), • 2013년 12월 4일 협상타결 선언, • 2014년 2월 10일 가서명, 4월 8일 공식서명, 12월 2일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년 12월 12일 발효 |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중국 | • 2007년 3월~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12년 5월, 7월, 8월, 10월 / 2013년 4월, 7월, 9월, 11월 / 2014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2015.2.25 가서명, 2015.6.1 정식서명 • 2015.08.31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년 12월 20일 발효 |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5년 기준) |

2) 한-ASEAN FTA 서비스협정은 2009년 5월 발효되었으며, 투자 협정은 2009년 9월에 발효되었음.

(계속)

| 진행단계 | 상대국 | 추진현황 | 의의 |
|------------|-------|--|-----------------------------------|
| 발효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6월~2010년 5월)후 잠정중단, • 2013년 12월 3일 공식협상 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개최(2014년 2월, 3월, 6월, 8월, 10월) •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2014.12.11 가서명, • 2015.3.23 정식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20일 발효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 2012년 8월 6일 협상개시 선언, 총 9차례 협상 개최(2012년 9월 / 2013년 5월, 10월 / 2014년 3월, 5월, 7~8월, 9~10월, 11월, 12월),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 2015.03.28 가서명, 2015.05.05 정식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5년 12월 20일 발효 | 우리의 제3위 투자대상국 ('15.9월 기준) |
| 협상재개, 여건조성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12월 협상개시,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중단, 2008년~2012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 총 9차례 개최 |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15년 기준) |
| | 인도네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 2012년 3월 28일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 총 7차례 협상 개최(2012년 7월, 12월 / 2013년 5월, 7월, 9월, 11월 / 2014년 2월) |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제3위 교역국 ('15년 기준) |
| 협상준비 공동연구 | 말레이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 2012년 12월 타당성연구 완료 |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

자료: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RCEP 국가들과의 FTA는 각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상이하고 농업분야의 민감성도 국가별·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방 수준도 상이하다. HSK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들과 체결한 FTA의 농업분야 개방 수준은 30.5%~86.8%로 국가별로 시장개방의 격차가 크다. 또한 한-미 FTA나 한-EU FTA에 비해서는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FTA 체결 당시 농업분야의 우려가 매우 컸던 중국과의 FTA의 개방 수준은 63.6%이며, 우리나라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품목은 대부분 양허제외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대폭 반영하였다.

표 2 RCEP 회원국들과의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양허안

| | 10년 이하 | 15년 이하 | 20년 이하 | 관세철폐 | 기타 | 유지.제외 | 예외 |
|-------|--------|--------|--------|-------|------|-------|-------|
| 싱가포르 | 1039 | 0 | 0 | 1039 | 0 | 583 | 583 |
| | 64.1% | 0.0% | 0.0% | 64.1% | 0.0% | 35.9% | 35.9% |
| ASEAN | 1092 | 0 | 0 | 1092 | 9 | 521 | 530 |
| | 67.3% | 0.0% | 0.0% | 67.3% | 0.6% | 32.1% | 32.7% |
| 인도 | 495 | 0 | 0 | 495 | 0 | 1127 | 1127 |
| | 30.5% | 0.0% | 0.0% | 30.5% | 0.0% | 69.5% | 69.5% |
| 호주 | 964 | 352 | 92 | 1408 | 8 | 206 | 214 |
| | 59.4% | 21.7% | 5.7% | 86.8% | 0.5% | 12.7% | 13.2% |
| 중국 | 579 | 202 | 250 | 1031 | 7 | 584 | 591 |
| | 35.7% | 12.5% | 15.4% | 63.6% | 0.4% | 36.0% | 36.4% |
| 뉴질랜드 | 936 | 359 | 70 | 1365 | 12 | 245 | 257 |
| | 57.7% | 22.1% | 4.3% | 84.2% | 0.7% | 15.1% | 15.8% |
| 베트남 | 1211 | 3 | 0 | 1214 | 0 | 408 | 408 |
| | 74.7% | 0.2% | 0.0% | 74.8% | 0.0% | 25.2% | 25.2% |

주: 각 FTA 양허안을 필자가 HSK 2015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자료: 각 FTA 양허안.

주요 품목별로 FTA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쌀과 쌀 관련 16개 세 번은 우리나라가 모든 FTA에서 양허제외한 품목이다. 보리는 겔보리와 쌀보리는 ASEAN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허제외하였다. ASEAN에게는 2016년까지 관세의 50%를 감축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에게는 ASEAN 특혜관세에서 추가적으로 50% 더 감축하기로 하였다. 콩(식용대두)도 ASEAN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관세감축은 없으나, 중국과 호주에게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ASEAN에게는 관세의 20%를 2016년까지 감축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에게는 한-ASEAN FTA 특혜관세에서 추가적으로 20% 더 관세감축하기로 하였다. 식용감자 역시 ASEAN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허제외하였다. ASEAN에게는 2016년까지 관세의 20%를 감축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에게는 추가적으로 20% 더 관세 감축하기로 했다.

쇠고기는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게는 관세를 15년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ASEAN과 베트남에게는 부분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 외 국가들에게는 양허제외하였다.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은 한-베트남 FTA에서 10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냉장 삼겹살은 한-호주 FTA에서 10년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모두 양허제외하였다. 닭고기는 냉동 가슴살과 날개는 호주에게는 관세를 18년 철폐로 양허

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양허제외하였다. 통닭은 호주, 뉴질랜드에게는 18년 철폐, ASEAN과 베트남에게는 부분 감축하기로 하였다.

탈·전지분유는 뉴질랜드에게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였고, ASEAN에게는 2016년까지 관세의 2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베트남에게는 ASEAN의 특혜관세에서 추가적으로 20% 더 부분감축하기로 했다. 치즈는 TRQ를 포함하여 호주에게는 13~20년 철폐로 양허하였고, 뉴질랜드에게는 7~15년 철폐로 하였다. 또한 ASEAN에게는 치즈의 관세를 2016년까지 50%p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버터의 관세는 호주에게는 TRQ를 제공하고 관세는 15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뉴질랜드에게는 TRQ를 포함하여 10년 철폐하기로 하였다. ASEAN에게는 2016년까지 관세의 20%를 감축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에게는 한·ASEAN FTA 특혜관세의 2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꿀은 ASEAN에게는 2016년까지 관세의 20%를 감축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에게는 15년 후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다. 그 외 국가들에게는 모두 양허제외하였다.

감귤은 RCEP 회원국들과 맺은 모든 FTA에서 양허제외하였고, 오렌지는 호주에게는 TRQ와 함께 계절관세로 양허하였고, ASEAN에게는 2016년까지 관세를 50%p 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사과와 배도 ASEAN에게는 2016년까지 관세를 50%p이하로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그 외 국가들에게는 양허제외하였다. 포도는 호주에게는 계절관세로 양허하였고, ASEAN에게는 2016년까지 관세의 20%를 감축하기로 하였고, 베트남은 한·ASEAN FTA의 20%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양념채소의 신선 제품은 모든 RCEP 회원국과의 FTA에서 양허제외하기로 하였고, 냉동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에게는 개방하기로 하였다. 인삼과 인삼가공품은 ASEAN과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허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싱가포르, 인도, 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양허제외를 하였으나,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베트남에게는 상당 부분 시장개방을 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개방을 하였고, ASEAN과 베트남에게 개방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은 대부분 관세를 부분 감축하였다. 천연꿀의 경우 베트남에게는 관세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것은 특이점이다.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한 품목들은 향후 RCEP 협상 상품분야의 개방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개방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한 중국과 인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³⁾

3) RCEP 협상시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품목은 <표 4>에 'O'로 표시함. RCEP 협상에서 관세철폐를 한다는 가정한다면, 양허제의 품목과 관세를 부분 감축한 품목들이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품목들임.

표 3 RCEP 회원국들과의 FTA에서의 우리나라 주요농산물 양허내역 비교

| | 품목 | 한·싱가포르 | 한·베트남 | 한·ASEAN FTA | 한·인도 FTA | 한·중 FTA | 한·호 FTA | 한·뉴 FTA |
|------|------------------------|--------|--------------------------------------|---|----------|-------------|----------------------------|---------------------------------|
|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 양허제외 | 한·ASEAN의 50%인하 | 2016년까지 5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맥아(269%), 맥주맥(513%) | 양허제외 | 한·ASEAN의 50%인하 | 2016년까지 50%감축 | 양허제외 | TRQ/양허제외 | 15년+ASG+TRQ | 10년간50%감축(맥아)/양허제외 |
| 콩 | 식용 콩(487%)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현행관세 유지+TRQ | 현행관세유지+TRQ | 양허제외 |
| | 기타(487%)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0년간 50%감축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 양허제외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은 10년간 50% 감축) |
| 감자 |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냉동, 건조: 즉시철폐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냉동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 양허제외(냉동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
| | 감자분(304%)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쇠고기 | 신선·냉장·냉동 (40%) | | 한·ASEAN의 20%인하 냉동: 양허제외 | 2016년까지 20%감축 (냉동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5년+ASG | 15년+ASG |
| | 식용설육(18%) | 양허제외 | 신선, 냉장, 허, 간: 3년철폐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20%감축 (신선/냉장, 허, 간장/냉동: 2016년까지 5%이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5년 | 15년 |
| 돼지고기 | 냉동 삼겹살(25%) | 양허제외 | 10년 철폐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0년/15년 | 양허제외 |
| |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7년/양허제외 | 18년/양허제외 |
| 닭고기 |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8년 | 양허제외 |
| | 절단하지 않은 닭(18, 20%)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8년 | 18년/양허제외 |
| |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8년/10년 | 양허제외 |
| 분유 | 탈지분유연유 (176, 89%)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현행관세유지+TRQ |

(계속)

| | 품목 | 한·싱가포르 | 한·베트남 | 한-ASEAN FTA | 한·인도 FTA | 한·중 FTA | 한·호 FTA | 한·뉴 FTA |
|---------|---------------------------|--------|----------------|----------------|----------|---------|-------------|------------|
| 분유 | 조제분유 (36, 40%)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3/15년+TRQ | 13/15년+TRQ |
| | 혼합분유(36%)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3년/15년 | 10년/15년 |
| 치즈 |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50%p이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20년/18년+TRQ | 12/15년+TRQ |
| | 체다치즈(36%) | 양허제외 | 15년철폐 | 2016년까지 50%p이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3년+TRQ | 7년+TRQ |
| 버터 | 버터(89%)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5년+TRQ | 10년+TRQ |
| 꿀 | 천연꿀(243%)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인조꿀(243%)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감귤류·오렌지 | 은주감귤(144%)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맨디린, 텐저린(144%)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계절관세 | 양허제외 |
| | 오렌지(50%)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50%p이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계절관세+TRQ | 양허제외 |
| 사과·배·포도 | 사과(45%)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50%p이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배(45%)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50%p이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포도(45%)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계절관세 | 양허제외 |
| 고추 |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냉동고추(27%) | 10년철폐 | 10년철폐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마늘 |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냉동마늘(27%) | 10년철폐 | 0~5%로 인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8년 | 18년 |
| 양파 |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 양허제외 | 한-ASEAN의 20%인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냉동 양파(27%) | 10년철폐 | 한-ASEAN의 20%인하 | 2016년까지 5%p이하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15년 | 15년 |
| 인삼류 | 뿌리삼류(222.8, 754.3%)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20%감축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 | 기타 인삼 가공품(754.3%) | 양허제외 | 2016년까지 20%감축 | 2016년까지 20%감축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양허제외 |

자료: 각 FTA별 협정문.

표 4 RCEP 협상시 우리나라의 추가 양허 부담 품목

| | 품목 | 한·싱가포르 | 한·베트남 | 한·ASEAN FTA | 한·인도 FTA | 한·중 FTA | 한·호 FTA | 한·뉴 FTA |
|---------|------------------------|--------|-------|-------------|----------|---------|---------------|---------------|
|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 0 | 0 | 0 | 0 | 0 | 0 | 0 |
|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 0 | 0 | 0 | 0 | 0 | 0 | 0 |
| | 맥아(269%), 맥주맥(513%) | 0 | 0 | 0 | 0 | 0 | X | 0 |
| 콩 | 식용 콩(487%)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487%) | 0 | 0 | 0 | 0 | 0 | 0 | 0 |
| 감자 | 식용 감자(304%), 냉동건조(27%) | 0 | 0 | 0 | 0 | 0 | 0 (냉동건조 X) | 0 (냉동건조 X) |
| | 감자분(304%) | 0 | 0 | 0 | 0 | 0 | 0 | 0 |
| 쇠고기 | 신선·냉장·냉동(40%) | 0 | 0 | 0 | 0 | 0 | X | X |
| | 식용설육(18%) | 0 | 0 | 0 | 0 | 0 | X | X |
| 돼지고기 | 냉동 삼겹살(25%) | 0 | 0 | 0 | 0 | 0 | 0 | 0 |
| |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 0 | 0 | 0 | 0 | 0 | X | 0 |
| |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 0 | 0 | 0 | 0 | 0 | X/O | X/O |
| 닭고기 |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 0 | 0 | 0 | 0 | 0 | X | 0 |
| | 절단하지 않은 닭(18, 20%) | 0 | 0 | 0 | 0 | 0 | X | X/O |
| |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 0 | 0 | 0 | 0 | 0 | X | 0 |
| 분유 | 탈전지분유연유(176, 89%) | 0 | 0 | 0 | 0 | 0 | 0 | 0 |
| | 조제분유(36, 40%) | 0 | 0 | 0 | 0 | 0 | X | X |
| | 혼합분유(36%) | 0 | 0 | 0 | 0 | 0 | X | X |
| 치즈 |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 0 | 0 | 0 | 0 | 0 | X | X |
| | 체다치즈(36%) | 0 | 0 | 0 | 0 | 0 | X | X |
| 버터 | 버터(89%) | 0 | 0 | 0 | 0 | 0 | X | X |
| 꿀 | 천연꿀(243%) | 0 | 0 | 0 | 0 | 0 | 0 | 0 |
| | 인조꿀(243%) | 0 | 0 | 0 | 0 | 0 | 0 | 0 |
| 감귤류 오렌지 | 온주감귤(144%) | 0 | 0 | 0 | 0 | 0 | 0 | 0 |
| | 맨더린, 탠저린(144%) | 0 | 0 | 0 | 0 | 0 | 0 | 0 |
| | 오렌지(50%) | 0 | 0 | 0 | 0 | 0 | 0 | 0 |

(계속)

| 품목 | | 한·싱가포르 | 한·베트남 | 한·ASEAN FTA | 한·인도 FTA | 한·중 FTA | 한·호 FTA | 한·뉴 FTA |
|---------|---------------------------|--------|-------|-------------|----------|---------|---------|---------|
| 사과·배·포도 | 사과(45%) | 0 | 0 | 0 | 0 | 0 | 0 | 0 |
| | 배(45%) | 0 | 0 | 0 | 0 | 0 | 0 | 0 |
| | 포도(45%) | 0 | 0 | 0 | 0 | 0 | 0 | 0 |
| 고추 |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 0 | 0 | 0 | 0 | 0 | 0 | 0 |
| | 냉동고추(27%) | X | 0 | 0 | 0 | 0 | 0 | 0 |
| 마늘 |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 0 | 0 | 0 | 0 | 0 | 0 | 0 |
| | 냉동마늘(27%) | X | 0 | 0 | 0 | 0 | X | X |
| 양파 |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 0 | 0 | 0 | 0 | 0 | 0 | 0 |
| | 냉동 양파(27%) | X | 0 | 0 | 0 | 0 | X | X |
| 인삼류 | 뿌리삼류(222.8, 754.3%)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인삼 가공품(754.3%) | 0 | 0 | 0 | 0 | 0 | 0 | 0 |

자료: 각 FTA별 협정문.

3. 우리나라의 對 RCEP 수입연망

앞에서는 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들과 체결한 FTA 현황과 품목별 양허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 품목들을 대상으로 RCEP으로부터의 수입 현황과 수입의존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식량작물

2013~2015년 평균 기준 우리나라의 쌀 수입액은 약 3억 7,000만 달러이며, RCEP 으로의 수입은 2억 7,000만 달러이다. RCEP은 우리나라 전체 쌀 수입에서 72.9%를 차지하고 있다. RCEP 국가 중 우리가 주로 쌀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과 ASEAN(태국, 베트남)이다. 중국산 쌀 수입은 약 2억 1,000만 달러이며, ASEAN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3,700만 달러이다. 동기간 보리의 총 수입은 약 1억 5,000만 달러이며, 이 중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72.2%로 높은 편이다. RCEP 국가 중 보리는 주로 호주로부

터 수입하고 있다.

감자 수입은 약 1억 6,000만 달러이며,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쌀과 보리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RCEP 국가들 중에서는 호주와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 한편, 감자는 주로 조제저장처리/냉동 제품으로 수입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생산하는 감자와 같은 형태의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의 총 수입은 1,700만 달러이다. RCEP으로의 수입은 약 700만 달러로 RCEP의 차지하는 비중은 41.7%로 높은 편이다.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는 대부분 호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콩(대두)의 우리나라 총 수입은 7억 4,000만 달러이며, 그 중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두는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주로 수입이 되고 있는 품목으로서 우리나라 대두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 5 우리나라의 역내 식량작물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 | 쌀 | 보리 | 감자 | 대두 |
|-------|-------|------------------|------------------|----------------|----------------|
| 전체 수입 | | 373.7 | 151.7 | 156.0 | 740.6 |
| RCEP | | 272.3 (72.9%) | 109.6 (72.2%) | 15.4 (9.9%) | 69.0 (9.3%) |
| ASEAN | 전체 | 37.2 | 0.0 | 0.5 | 0.0 |
| | 브루나이 | - | - | - | - |
| | 인도네시아 | 2.3 | - | 0.0 | 0.0 |
| | 캄보디아 | 0.0 | - | - | 0.0 |
| | 라오스 | - | - | - | - |
| | 미얀마 | 0.7 | - | - | 0.0 |
| | 말레이시아 | 0.0 | - | 0.2 | 0.0 |
| | 필리핀 | 0.0 | - | 0.0 | - |
| | 싱가포르 | 0.0 | 0.0 | 0.0 | 0.0 |
| | 태국 | 20.9 | - | 0.3 | 0.0 |
| 베트남 | 13.4 | - | 0.1 | 0.0 | |
| 중국 | | 210.5 | 6.3 | 4.7 | 57.2 |
| 일본 | | 0.0 | 0.0 | 0.5 | 0.0 |
| 호주 | | 21.7 | 98.6 | 8.0 | 3.2 |
| 뉴질랜드 | | 0.0 | 0.0 | 1.6 | - |
| 인도 | | 2.9 | 4.7 | 0.1 | 8.6 |

주: 2013~15년 3개년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용 수입은 2억 3,000만 달러 수준이다. 식용 대두 중 RCEP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800만 달러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식용대두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3.2. 축산물

우리나라의 전체 축산물 수입은 약 58억 5,000만 달러 수준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19억 달러로 RCEP이 전체 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5%이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총 수입은 약 18억 달러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0억 7,000만 달러이다. 쇠고기 수입에서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59.3%로 높은 편이다. 대부분은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약 1억 1,000만 달러 수입되고 있다.

표 6 우리나라의 역내 축산물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꿀 |
|-------|-------|--------------------|---------------|-----------------|----------------|
| 전체 수입 | | 1,799.3 | 1,196.7 | 305.0 | 8.8 |
| RCEP | | 1,067.2 (59.3%) | 1.0 (0.1%) | 72.0 (23.6%) | 3.3 (37.7%) |
| ASEAN | 전체 | 0.1 | 0.0 | 61.7 | 0.1 |
| | 브루나이 | - | - | - | - |
| | 인도네시아 | 0.0 | - | - | 0.0 |
| | 캄보디아 | - | - | - | 0.0 |
| | 라오스 | - | - | - | 0.0 |
| | 미얀마 | - | - | - | 0.0 |
| | 말레이시아 | - | - | - | 0.0 |
| | 필리핀 | 0.1 | 0.0 | 0.0 | 0.0 |
| | 싱가포르 | - | 0.0 | 0.0 | 0.0 |
| | 태국 | - | - | 61.7 | 0.0 |
| | 베트남 | - | - | - | 0.1 |
| 중국 | | 0.0 | 0.0 | 10.1 | 0.0 |
| 일본 | | - | 0.0 | 0.0 | 0.0 |
| 호주 | | 955.7 | 1.0 | 0.2 | 1.0 |
| 뉴질랜드 | | 111.4 | 0.0 | 0.0 | 2.2 |
| 인도 | | 0.0 | - | - | 0.0 |

주: 2013~15년 3개년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돼지고기 수입은 총 약 12억 달러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1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닭고기의 총수입은 3억 500만 달러 수준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7,200만 달러로 전체 닭고기 수입에서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이다. RCEP 국가 중에서는 태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으로부터도 수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는 열처리 후 밀폐용기에 담긴 것 또는 기타 조제저장식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꿀 수입은 880만 달러 수준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330만 달러이다. RCEP이 꿀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37.7%이다. 꿀은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품 수입액은 약 8억 3,900만 달러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1억 8,4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의 22.0%를 차지하고 있다. 탈지분유의 총 수입은 7,400만 달러 수준이며, RCEP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2.1%이다. RCEP 국가들 중 수요 수입 국가는 호주이며, 일부는 뉴질랜드로부터도 수입되고 있다. 전지분유의 총 수입은 840만 달러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600만 달러이다. RCEP이 전지분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6%로 매우 높다. 전지분유는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조제분유의 총수입은 약 5,000만 달러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2,300만 달러로 전체 조제분유 수입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조제분유는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버터 총 수입은 2,600만 달러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400만 달러이다. RCEP 국가들 중 버터는 주로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호주로부터도 일부 수입되고 있다.

치즈의 총 수입은 약 4억 7,000만 달러로 전체 낙농품 수입의 55.7%를 차지하고 있다. RCEP으로부터의 치즈 수입은 약 1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치즈는 주로 뉴질랜드와 호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3.3. 과일류

신선 과일의 대부분은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사과와 배 수입은 대부분이 주스나 기타방법조제 등과 같은 가공품 수입이다. 우리나라의 사과 수입은 약 1,900만 달러이고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700만 달러이다. RCEP이 사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6%이고, 중국으로부터 사과주스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배의 총 수입은 약 30만 달러 수준이며, RCEP으로부터의 수입인 10만 달러 수준이다. RCEP이 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3%이다.

우리나라 오렌지 수입은 2억 1,600만 달러이고,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240만 달러에 불과하다. RCEP이 오렌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이다. RCEP 국가 중 오렌지는 주로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포도 수입은 약 2억 4,000만 달러이며,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표 7 우리나라의 역내 낙농품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 | 낙농품 전체 | 탈지분유 | 전지분유 | 조제분유 | 버터 | 치즈 |
|-------|-------|------------------|-----------------|----------------|-----------------|-----------------|------------------|
| 전체 수입 | | 838.9 | 74.2 | 8.4 | 51.5 | 25.9 | 467.4 |
| RCEP | | 184.2 (22.0%) | 23.8 (32.1%) | 6.0 (71.6%) | 23.1 (44.9%) | 13.5 (51.9%) | 101.3 (21.7%) |
| ASEAN | 전체 | 0.7 | 0.0 | 0.0 | 0.0 | 0.0 | 0.2 |
| | 브루나이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0.0 | 0.0 | 0.0 | - | - | 0.0 |
| | 캄보디아 | - | - |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 |
| | 미얀마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0.0 | 0.0 | - | 0.0 | 0.0 | 0.0 |
| | 필리핀 | 0.0 | - | 0.0 | 0.0 | - | 0.0 |
| | 싱가포르 | 0.6 | 0.0 | 0.0 | 0.0 | 0.0 | 0.2 |
| | 태국 | 0.0 | - | 0.0 | - | - | 0.0 |
| | 베트남 | 0.0 | - | - | 0.0 | - | - |
| 중국 | | 0.7 | 0.0 | 0.0 | 0.6 | 0.0 | 0.0 |
| 일본 | | 0.3 | 0.0 | 0.0 | 0.0 | 0.0 | 0.1 |
| 호주 | | 69.6 | 20.8 | 2.3 | 7.4 | 3.2 | 28.9 |
| 뉴질랜드 | | 112.9 | 3.0 | 3.6 | 15.2 | 10.3 | 72.1 |
| 인도 | | 0.1 | 0.1 | 0.0 | 0.0 | 0.0 | 0.0 |

주: 2013~15년 3개년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표 8 우리나라의 역내 과일류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 | 사과 | 배 | 오렌지 | 포도 |
|-------|-------|----------------|----------------|---------------|---------------|
| 전체 수입 | | 18.7 | 0.3 | 216.2 | 239.8 |
| RCEP | | 6.9 (36.6%) | 0.1 (39.3%) | 2.4 (1.1%) | 1.1 (0.5%) |
| ASEAN | 전체 | 0.1 | 0.0 | 0.8 | 0.0 |
| | 브루나이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캄보디아 |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미얀마 | - | - | - | - |
| | 말레이시아 | 0.0 | 0.0 | 0.0 | 0.0 |
| | 필리핀 | - | - | 0.0 | 0.0 |
| | 싱가포르 | 0.0 | - | - | 0.0 |
| | 태국 | 0.1 | - | 0.8 | 0.0 |
| 베트남 | 0.0 | - | 0.0 | - | |
| 중국 | | 5.2 | 0.1 | 0.0 | 0.4 |
| 일본 | | 0.0 | - | 0.0 | 0.0 |
| 호주 | | 0.1 | 0.0 | 1.6 | 0.7 |
| 뉴질랜드 | | 1.5 | - | 0.0 | 0.0 |
| 인도 | | 0.0 | - | 0.0 | 0.0 |

주: 2013~15년 3개년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4. 양념채소 및 인삼

우리나라의 채소류 수입은 약 8억 5,000만 달러이며, 그 중 RCEP으로부터의 수입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양파의 총수입은 약 3,600만 달러이며, RCEP으로의 수입은 약 3,5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96.6%를 차지하고 있다. 양파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늘 총 수입은 약 4,600만 달러이며, 그 중 RCEP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마늘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고추의 수입은 약 1억 2,300만 달러이며, 고추 역시 전체 수입의 99.8%는 RCEP(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인삼 수입은 380만 달러 수준이며, 그 중 320만 달러는 RCEP으로부터 수입하고 있

다. RCEP이 인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4%이며,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일본과 인도로부터도 일부 수입되고 있다.

표 9 우리나라의 역내 양념채소류 및 인삼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 | 양파 | 마늘 | 고추 | 인삼류 |
|-------|-------|-----------------|-----------------|------------------|----------------|
| 전체 수입 | | 36.4 | 45.6 | 123.4 | 3.8 |
| RCEP | | 35.2 (96.6%) | 45.5 (99.8%) | 123.1 (99.8%) | 3.2 (84.4%) |
| ASEAN | 전체 | 0.4 | 0.0 | 9.0 | 0.0 |
| | 브루나이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0.0 | 0.0 |
| | 캄보디아 | - | - | 0.0 | - |
| | 라오스 | - | - | - | - |
| | 미얀마 | 0.0 | - | 0.0 | 0.0 |
| | 말레이시아 | 0.0 | - | 0.0 | 0.0 |
| | 필리핀 | - | - | 0.0 | 0.0 |
| | 싱가포르 | 0.0 | - | 0.0 | 0.0 |
| | 태국 | 0.0 | 0.0 | 0.0 | 0.0 |
| | 베트남 | 0.4 | 0.0 | 8.9 | 0.0 |
| 중국 | | 34.2 | 45.5 | 113.9 | 3.0 |
| 일본 | | 0.5 | - | 0.1 | 0.1 |
| 호주 | | 0.0 | 0.0 | 0.0 | 0.0 |
| 뉴질랜드 | | - | 0.0 | 0.0 | 0.0 |
| 인도 | | 0.0 | 0.0 | 0.1 | 0.1 |

주: 2013~15년 3개년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5. 역내 국가별 주요 수입 품목

앞에서 살펴본 수입 현황을 바탕으로 국가별·품목별로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간략하게 표로 나타내었다. <표 10>에서 O 표시는 해당 품목의 RCEP 역내 국가 중 주요 수입국이며, △ 표시는 일부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음영 표시는 기 체결 FTA 양허안과 교역 동향을 함께 고려했을 때, RCEP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관세개방 부담이 있을 품목과 대상 국가를 의미한다.

향후 RCEP 협상이 타결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추가 부담이 발생할 품목은 쌀, 보

리, 대두, 감자, 닭고기, 분유, 꿀, 고추, 마늘, 양파, 인삼과 같은 품목과 검역으로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과일류 등이다. 즉 일부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적으로 추가 개방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역내 국가별 주요 수입 품목 및 RCEP 협상 타결시 실질적 관세개방부담 품목

| | ASEAN | 인도 | 중국 | 호주 | 뉴질랜드 |
|------|----------------|----|----|----|------|
| 쌀 | △ (태국, 베트남) | | 0 | | |
| 보리 | | | △ | 0 | △ |
| 대두 | | | 0 | △ | △ |
| 감자 | | | △ | 0 | |
| 쇠고기 | | | | 0 | 0 |
| 돼지고기 | | | | | |
| 닭고기 | 0 (태국) | | △ | | |
| 분유 | | | | 0 | 0 |
| 치즈 | | | | 0 | 0 |
| 버터 | | | | 0 | 0 |
| 꿀 | △ (베트남) | | | 0 | 0 |
| 감귤 | 검역 | | | | |
| 오렌지 | 검역 | | | | |
| 사과 | 검역 | | | | |
| 배 | 검역 | | | | |
| 포도 | 검역 | | | | |
| 고추 | | | 0 | | |
| 마늘 | | | 0 | | |
| 양파 | | | 0 | | |
| 인삼 | | △ | 0 | | |

자료: 각 FTA별 협정문.

4. 맺음말 및 시사점

RCEP은 TPP와 함께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출범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각국 정상과 장관들의 협상타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16개국이 참여하는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단일 양허안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도 협상 타결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RCEP 회원국들 중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이미 협상 전반에서 높은 수준으로 타결된 TPP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 수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선 주자들은 현재 보호주의적인 입장에서 TPP를 바라보고 있고, 미 의회 내에서도 TPP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 TPP 조기 발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RCEP을 빠르게 타결 시켜야 할 주요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RCEP의 연중 타결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일 간의 큰 틀에서의 타협이 있지 않는한 RCEP 협상의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기체결 FTA 양허안과 우리나라와 RCEP 회원국과의 교역 자료를 바탕으로 RCEP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추가적인 개방이 부담되는 품목을 살펴본 결과, 기체결 FTA에서 이미 개방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해당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RCEP 협상 체결에 따른 추가 개방 부담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과 ASEAN과 낮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향후 RCEP 협상에서 이들 국가의 개방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도 일부 낙농품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CEP 협상은 당초 ASEAN과 인도가 포함되어 있어 낮은 수준으로 양허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TPP가 타결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상품 양허협상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일반 공산품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분야는 RCEP 역내 국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고 해당 품목들은 기체결 FTA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기 때문에 RCEP 협상에서 민감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정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공산품 분야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산물 분야에서는 민감성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협상에서의 레버리지(leverage) 확보와 대내적으로는 추가적인 개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정대회, 송주호. 2014. FTA 협상에서의 농산물 민감품목 선정방안: RCEP 협상에서의 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대회, 이상현, 한두봉. 2016. 기체결 FTA를 반영한 관세개방도 분석과 메가 FTA에의 시사점,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이상현, 정대회, 안수정. 2015. 「TPP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정대회, 조규담. 201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영훈, 어명근, 이상현, 조성주, 정대회, 안수정, 오새라. 2016. 「Post-FTA 농업통상 현안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예정 12월.

참고사이트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산업자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 Global Trade Atlas(www.gtis.com)